

학교법인 예원예술대학교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의거)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예원예술대학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원예술대학교를 설치·경영한다.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92 에 둔다.(개정 2014.12.23.)

제5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관할청에 14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6. 개정 2015.2.16.)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의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자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편성하되,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친후 이사회 의 심의 · 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하며,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회 의 심의 · 의결로 확정하고, 이사장이 집행한다. (개정 2006.12.18)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2(예·결산보고 및 공시)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2.18)

제3절 예산·결산자문위원회(삭제 2006.12.18)

제13조(예산·결산자문위원회 설치) (삭제 2006.12.18)

제14조(위원회의 조직) (삭제 2006.12.18)

제15조(위원장 선출 및 직무) (삭제 2006.12.18)

제16조(회의) (삭제 2006.12.18)

제17조(위원회의 간사 등) (삭제 2006.12.18)

제3장 기관

제1절 임원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8인(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2. 감사 2인

제18조의2(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5년 (개정 2014.12.23.)
2. 감사 3년 (개정 2006.12.18)

②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신설 2006.12.18)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06.12.18)

제18조의3(임원의 공개)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 임원의 경우 임원의성명,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2.18)

제18조의4(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홈페이지를 통하여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제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2006.12.18, 개정2008.7.16)

제19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2008.7.16)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의2(개방이사과 감사의 자격 및 선임방법) ① 이 법인의 개방이사 및 제20조제6항에 따른 감사(이하 “개방임원”이라 한다)는 학교법인 예원예술대학교 건축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판단되는 자로 한다. (개정2008.7.16)

② 개방임원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개방이사는 대상인원의 2배수 추천)한 자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2008.7.16)

③ 이사장은 개방임원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재직임원은 임기만료 3개월 전)이내에 추천위원회에 개방임원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2008.7.16)

④ 추천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간 안에 이사장이 개방임원의 추천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제2항에 따른 추천을 할 수 있다. (개정2008.7.16)

⑤ 이사장은 개방임원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정관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함께 지시할 수 있다. (신설2008.7.16)

⑥ 이사장으로부터 추천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감사는 단수 추천)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신설 2008.7.16)

(본조신설 2006.12.18)

제19조의3(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평의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회가 선출한 평의원 4인
2. 직원회가 선출한 평의원 2인
3. 학생회가 선출한 평의원 1인
4. 교외 평의원 4인(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동문 및 인사)

③ 평의회 구성에 있어서 제2항의 각 구성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6.12.18)

제19조의4(대학평의원회 조직) ① 평의회에 의장과 부의장을 둔다.

② 의장 및 부의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18)

제19조의5(대학평의원회의 기능) 평의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제4호, 및 제6호는 자문한다. (개정2008.7.16)

1. 대학의 발전계획안에 관한 사항
2. 대학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2008.7.16)
3.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2008.7.16)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2008.7.16)
5.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2008.7.16)
6.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6.12.18)

제19조의6(대학평의원회의 운영 등) 대학평의원회 위원 위촉 및 운영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18)

제19조의7(추천위원회 조직과 구성 및 운영) ① 추천위원회는 예원예술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7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4인
 2.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3인
- ③ 추천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18)

제20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12.18)

③ 이사 정수의 3분의1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④ 개방이사는 이사정수의 4분의1(2명)로 한다. (신설 2006.12.18)

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자 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06.12.18)

⑥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신설 2006.12.18, 개정2008.7.16)

제21조(이사장 선임 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삭제 2006.12.18)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3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와 그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5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개정2008.7.16)

②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개정2008.7.16)

③ 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개정2008.7.16)

제2절 이사회

제26조(이사회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개정2021.7.19)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 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 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개정 2006.12.18)

② 이사회 회의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6.12.18)

제28조(이사회 의결 및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29조(이사회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0조(이사회회의 소집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6.12.18)

제4장 수익사업

제31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부동산임대사업
2. 기타수익사업

제32조(수익사업의 명칭) 제31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사업 및 기타수익사업을 경영한다.

제33조(수익사업체의 주소) 제31조의 수익사업의 사무소는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92 에 둔다. (개정 2014.12.23.)

제34조(관리인) ① 제31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복무·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5장 해산

제35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14.12.23.)

제36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이 법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학교법인이나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에 선정되도록 한다. (개정 2014.12.23., 2019.02.08., 2021.07.19)

제37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9.02.08)

제6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1관 임용(개정 2021.07.19)

제38조(임용)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에 임용된 전임교원이 임기중에 정년이되는 경우에는 정년퇴임일을 임기만료일로 보며, 대학교의 장을 임기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9.02.08., 2021.07.19)

② 2002.1.1 현재 재직중인 학교의 장 이외 전임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이 경우 승진·재임용 때마다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개정 2021.07.19)

1. 교 수 정년까지

2. 부 교수 6년

3. 조 교수 6년(개정 2019.02.08)

4. <삭제 2014.12.23.>

③ 신규채용되는 교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하되 임용절차는 제2항을 준용한다.

1. 근무기간

가. 교수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나. 부교수 및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개정 2014.12.23.)

2. 급여 : 정관 제44조로 정하는 보수에 의해 지급

3. 근무조건 : 교수시간 및 소속학부(과)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4. 업적 및 성과 : 연구업적·논문지도·진로상담 및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6. 대학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9.02.08.)

④ 대학 교육기관의 부총장, 대학원장, 각 처장, 각 원장의 보직은 학교의 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하고 그 외 보직은 학교의 장이 보하고 이사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개정 2007.08.08.,2019.02.08)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07.19)

⑥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당해학교 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9.02.08., 2021.07.19)

제2관 신분보장

제39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1.07.19)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21.07.19)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개정 2021.07.19)

6. 국제기구·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개정 2021.07.19)

7. 자녀(만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개정2008.7.16.,2019.02.08., 2021.07.19)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신설 2019.02.08.)

8. 관할청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개정 2019.02.08.)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신설 2021.07.19)

10.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신설 2021.07.19)

11. 그 밖에 휴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21.07.19)

제40조(휴직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3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제39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된 때까지로 한다.
3. 제3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제3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3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39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2008.7.16.)
7. 제39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8. 제3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1.07.19)

9. 제3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 근무, 해외 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 할 수 없다. (신설 2021.07.19)

제41조(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39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2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39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기본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기본급의 8할을 지급한다.(개정 2019.02.08.)

② 제3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와 제4호, 제6호, 제7호2, 제8호,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02.08.)

③ 제39조 7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에 의거하여 지급한다.(개정 2019.02.08.)

제43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1.07.19.)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 임용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개정 2021.07.19.)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07.19.)

⑦ 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

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2021.07.19.)

제44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 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45조의2(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수당)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의 실시 여부와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개정 2019.02.08.)

제45조의3(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45조의4(교원의 정년) ① 교원의 정년은 국·공립대학의 교원에 준용한다.

② 교원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46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12.18., 개정 2021.07.19)

제47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교의 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임용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용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개정 2019.02.08.)
2. 삭제(2019.02.08.)
3.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가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21.07.19)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과 사회봉사활동
2.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 품위 유지

제48조(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49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0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성원과 의결)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인사위원회 회의 및 심의 내용을 특정인의 인사에 관계되는 회의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1조(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한다.

제52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3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4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법인이사 또는 해당 학교의 교원과 외부위원(1명) 중에서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 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개정 2019.02.08.)

③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신설 2019.02.08.)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그 밖의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 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외부인원은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9.02.08.)

⑤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신설 2019.02.0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6조의3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54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6조의3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55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6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7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57조의2(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7조의3(징계의결 요구 사유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07.19)

제58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9조(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07.19)

③ 임용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명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21.07.19)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9조의2(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관할청으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제65조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서를 통고 받은 때에는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이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하여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경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여야 하며, 교원징계위원회가 재심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0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다음 1호 내지 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3호 내지 4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02.08.)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신설 2019.02.08.)

2.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신설 2019.02.08.)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신설 2019.02.08.)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신설 2019.02.08.)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1항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신설 2019.02.08.)

6.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신설 2019.02.08.)

제60조의3(비밀누설의 금지) ①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9.02.08.)

제61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행정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

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62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절 사무직원(개정 2019.02.08.)

제63조(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직무직 및 고용원 등을 포함 한다. 이하 “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19.02.08.)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수행직무 및 직종에 따라 학력, 경력, 전문성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자격 등이 우수한 경우에는 우선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9.02.08.)

③ 재직중인 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63조의2(직원의 정년) 직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개정 2019.02.08.)

제64조(임용) ① 직원의 신규임용·승진·승급·전직·전보·강임·휴직·직위해제·복직·면직·해임·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02.0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 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개정 2019.02.08.)

④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과 학교간에 인사 교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02.08.)

제64조의2(근속승진)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예원예술대학교의 직원에게는 국가공무원 승진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12.23., 개정 2019.02.08.>

제65조(복무)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9.02.08.)

제66조(보수) 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02.08.)

제67조(신분보장) 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9.02.08.)

제68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 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직원의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개정 2019.02.08.)

② 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회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02.08.)

제7장 직제

제1절 법인

제69조(법인사무국)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4급 이상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대학교

제70조(총장 등) ①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 대학교에 부총장과 대외협력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부총장과 대외협력부총장의 경우 교수 또는 2급 직원으로 보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대외협력부총장의 경우 외부인사를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8.19., 2021.07.19)

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0조의2(대학원장) ①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

② 대학원장은 부교수 이상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4.12.23.)

③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원의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71조(학부(과)장) ① 대학교의 각 학부(과)에 학부(과)장을 둔다.

② 학부(과)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각 학부(과)의 교무를 총괄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72조(하부조직) ① 대학교에 각 처(기획조정처, 교학지원처, 입학홍보처, 행정지원처 등)와 산학협력단을 둔다. (개정 2006.12.18., 2019.02.08., 2021.07.19)

② 각 처의 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보하고, 행정지원처장은 4급이상의 사무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02.08.)

③ 각 처에는 필요한 팀 또는 부서를 두며, 부처장 또는 팀장은 처장급보다 하위의 교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9.02.08.)

④ 대학교에 교육, 연구진흥과 학교발전에 필요한 특수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특별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9.02.08.)

⑤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정한다. (신설 2019.02.08.)

제73조(부속기관) ① 대학교에는 총장이 필요한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부속기관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기관의 장은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19.02.08.)

③ 부속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분장된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정원

제74조(정원) 법인 및 대학교에 두는 일반 직원의 정원은 별표1, 2와 같다.

제8장 보칙

제75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전북지역)신문에 공고한다.

제76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77조(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생 년 월 일	임기	주 소
이사장	차 종 선	1954. 12. 1.	4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337 서호아파트 105동 801호
이 사	김 덕 순	1968. 11. 19.	4년	익산시 부송동 1075 주공 2차아파트 204동 1205호
이 사	김 용 규	1952. 9. 4.	4년	익산시 영등동 2차 제일아파트 203동 801호
이 사	권 양 기	1957. 2. 7.	2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582
이 사	이 재 호	1958. 4. 23.	2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636-2 성원골드아파트 가동 201호
이 사	국 영 희	1956. 12. 22.	2년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205-2 전원빌라 207호
이 사	진 성 태	1945. 2. 17.	2년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620 동성아파트 11동 1409호
감 사	안 태 관	1968. 3. 2.	2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858-1 아주 대우1차아파트 107동 309호
감 사	조 창 호	1964. 2. 1.	1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동아현대아파트 104동 1403호

부 칙

- 1.(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2.(교직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교직원징계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사건은 징계사유 발생 당시의 정관 규정에 의한다.
- 3.(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예원대학교 소속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 4.(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2의 각 직급에 임용된 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1.(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 2.(계약제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임용 제청된 신규채용자부터

적용하며, 2001년 12월 31일까지 임용 제청되어 재직중인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재직중인대학교원에대한임용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②.(임원 선임기간의 예외) 개정 정관 시행일이후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선임되는 개방이사 또는 감사는 사립학교법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원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충할 수 있다.
- ③.(감사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 정관 시행 당시재임 중인 감사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감사의 임기 종료일까지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2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법인 직원 정원 (2006.12. . 변경)(2015.5.26. 변경)(2016.8.19. 변경)

직 군	직 급	정 원
사 무 직	2급	1
	4급	1
	6급	1
	8급	1
	소 계	4
총 계		4

「별표2」 대학교 직원 정원 (2006.12. . 변경)(2015.5.26. 변경)

직 군	직 급	정 원
일 반 직	2급	1
	3급	1
	4급	5
	5급	6
	6급	7
	7급	14
	8급	
	9급	
	소 계	
기 술 직	5급	1
	7급	1
	9급	1
	소 계	
총 계		37명

교육용 기본재산 확보내역

1. 건축기준면적 : 15,200㎡

2. 확보내역

구분	재산의 종 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감정평가액	소유자	비 고
부동산	토지	전북 임실 신평 창인리	271	학교용지	24,673		예문학원	
			304	전	532		"	
			78-5	도	659		"	
			78-6	도	31		"	
			78-7	도	63		"	
			314-5	도	31		"	
			315-1	도	46		"	
			317-2	도	371		"	
			소 계		26,406			
	건물	상 동	271		10,756	3,600,000,000	예문학원	
			상 동		4,600	2,121,000,000		
			소 계		15,356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내역

1. 기준액 : 4,400,000,000원

2. 확보내역

구분	재산의 종류	예치기관			수량	금액 (평가액)	예금주 (출연자)	비고
예금	정기예금	(주) 고려상호신용금고			1	520,000,000	학교법인 예문학원	
						20,000,000	학교법인 예문학원	
소계						540,000,000		
구분	재산의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금액 (평가액)	소유자	비고
부동산	토지	익산시 팔봉동	371-1	전	3,425	3,817,340,000	예문학원	
			371-2	답	443			
			372-3	대	431			
			372-5	대	399			
			372-8	도	60			
			383-2	대	1,276			
			383-3	산	767			
			384-1	전	1,256			
			385	대	1,000			
			385-1	대	795			
			386-1	대	1,319			
		387-1	대	1,203				
	전주시 태평동1가	39-1	대	2,112	455,000,000	예문학원	기존	
소계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구분	재산의 종류	소재지	지번	면적 (㎡)		금액 (평가액)	소유자	비고
부동산	건물	익산시 팔봉동	372-3	음식점	326.55㎡	801,623,400	예문학원	
			372-5	1층 예식장	397.53㎡			
			383-2	2층 예식장	280.8㎡			
			385	지하실	116.7㎡			
			385-1	음식점	72㎡			
			386-1	음식점	72㎡			
			387-1	사무실 (사워장, 휴게실)	105.3㎡			
			387-1	1층 골프연습장	106.98㎡			
387-1	2층 골프연습장	106.98㎡						
소계					801,623,400			
총계						5,613,963,400		